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한다.

안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안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안건 심사·결정 및 승인
2. 충청북도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 심의
3.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등에 대한 심사·결정을 위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과 같음)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2. 4인의 위원은 충청북도 의회의원 2명과 소속공무원 2명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인중에서 선임 ③ (생략)	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7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자 2. 4명..... ② 1.....7명..... 2.....4명..... ③ (현행과 같음)	제2조(구성) ①1명..... 각 호에 따라..... 1.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개정안과 같음) ②.....각 호에 따라.....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무자 중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5. 충청북도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 심의 6.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p>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청북도 소속 4급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2. 충청북도의회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3. 시·군의회의 의원, 시·군의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p>제3조(기능) <u>공직자윤리법에 따른</u> <u>안전 심사·결정 및 승인</u></p>	<p>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안전 심사·결정 및 승인</u> 2. 충청북도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 심의 3.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p><신설></p>	<p>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p>	<p>(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③(생략)</p> <p>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②(생략)</p>	<p>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③(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②(현행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② (생략)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p>	<p>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인 출석요구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 위임</p>	<p>(개정안과 같음)</p>
<p>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생략) ② 간사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p>	<p>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감사관실 공직윤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p>	<p>(개정안과 같음)</p>
<p>제8조(수당 등) (생략)</p> <p>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생략)</p> <p>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생략)</p>	<p>제9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p> <p>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현행과 같음)</p> <p>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현행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